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중능분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11. 21.(화요일), 14:00 ~ 20: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홍승재(위원장), 김문식, 남호대, 배용규, 소현수, 심경미, 이시영, 장호수, 조재모, 헤 도, 홍보식, 홍석주(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1 덕수궁 등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 2 서울 숭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3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 증축
- 4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5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6 고양 서오릉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허가변경)
- 7 남양주 영빈묘 주변 생활체육시설 부지조성 및 건축물 신축
- 8 남양주 사릉 주변 창고시설 신축 (8건)
- 9 남양주 성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
- 10 (사적)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11 (사적)파주 장릉 외3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12 (사적)양주 온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13 (사적)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14 경복궁 장소사용허가(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검토사항】

【보고사항】

- 1 효종 영릉 향어로 및 주변 복원정비공사
- 2 창경궁관리소 근로자 휴게실(가설 컨테이너) 설치
-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01

1. 사적 덕수궁 등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덕수궁」 및 국보 「서울 송례문」 주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덕수궁 및 국보 송례문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9월, 9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사유 : 신청한 노선 선형의 불가피성, 대안 노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고 소음, 진동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보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송례문(국보), 덕수궁(사적)

- 소재지 : (덕수궁)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정동)
(송례문)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남대문로4가)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성동구 상왕십리동 일원
(덕수궁 문화재구역에서 62m/송례문 문화재구역에서 88.2m 이격)
 - 덕수궁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및 3구역(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송례문 허용기준 1구역(원지형보존) 및 3구역(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총연장 : 제2공구 5.76km (GTX-B노선 용산~상봉간 19.9km)
 - 사업기간 : 2023.01.16.~2024.03.15.
 - 구조물 : 터널 5.56km / 서울역(정거장) 0.20km / 환기구 2개소
 - 부설심도 : 지하 50m~90m

(4) 신청인 의견

- 본 사업과 유사하게 서울특별시 내 문화재를 다수 통과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이 2019년경 서울특별시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허가를 득한 사례를 고려하였음
- 지하 50m 이상의 노선 건설로, 지상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공사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조물 안정성, 발파진동 검토 등을 시행하였고, 대심도개발, 발파진동저감공법, 지하수위 계측, 문화재 정밀계측, 모니터링 계획 등을 실시하겠음

라. 참고사항

(1) 검토의견(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덕수궁 및 숭례문 지표면 아래에 건설되는 것으로 해당 노선의 공사 또는 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 등을 포함하여 당해 문화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소음·진동에 관한 전문가 기술 검토 의견 등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보류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02

2. 서울 송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보 「서울 송례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송례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송례문(국보)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9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길 12일대
 - 사업내용
 - 허용기준 2구역 일부 3구역으로 조정
 - 조정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공통사항 내용 수정

구분	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0-113호, 2010.11.03)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3구역	·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항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항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관찰(예:지붕 색상·회색, 발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결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항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구분	평지붕	허용기준 (칙색·표기수정, 칠향·추기)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에 따름).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항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측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등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신청인 의견

- 남대문시장은 1414년에 시전 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임.

- 현존 시설물들은 대부분 건축법 제정(1962년) 이전에 건립
 - 현재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관리중(구조, 피난, 설비, 내진, 소방 등 전체 노후화로 위급 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 예상)
- 재해방지 등을 위한 선 규제완화를 통해 시설개선 추진 필요
 - 기존 구역을 토대로 토지등 소유자의 설득에 한계 및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 시 좌초될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 매우 큼
 - ※ 동일한 보존지역내의 미개발지는 2구역으로 설정되어 현재도 개발이 전무한 실정임 (이미 개발된 지역과의 비교 결과, 과도한 규제 등 형평성 문제)
- 따라서, 남대문시장 일대의 (일부)규제완화로 점진적인 시설개선 등을 통해 국가 역사문화자원의 상징공간인 숭례문과 남대문시장은 명칭, 기능, 입지 측면에서 관광명소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 형성

- 주민의견수렴 : 1,835명(기간 : '23. 8.18~9. 7<20일간>)
 - 남대문시장 연합상인회(1,585명) : 현재 시설 노후화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허용기준 조정으로 시설확충 등 시장환경 개선 가능
 - 남대문시장 주식회사(250명) : 노후된 건물이 많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허용기준 조정으로 시장에 부족한 기능의 확보 가능
- 전문위원 자문 : 2명(문화재청 위원 및 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
 - 기 고시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재 개발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용도지역에 따른 형평성 및 문화재 내·외부 조망성(기존 건물에 의하여 차폐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서울시 보호조례 양각 적용)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23.11.10./문화재위원 ○○○, ○○○, ○○○, ○○○)

- 숭례문 문화재 입지, 장소성을 고려할 때 금번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구역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03

3.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 증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노원기차마을) 증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3월 허가사항 중 일부만 건축 후 증축을 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추진현황>

- '20.03. : 문화재현상변경 승인
- '21.10. : 건축공사 착공
- '22.05. : 건축공사 준공(05.31.)
- '22.11. : 노원기차마을1관(스위스관) 개관(11.18.)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태릉과 강릉(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53번지 일대
(서울 태릉과 강릉 문화재구역에서 90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화랑대공원 내 기차마을 증축

	기허가사항	건축현황	금회 증축안	증감
대지면적	2,350㎡	2,350㎡	2,350㎡	-
연면적	548㎡	444.71㎡	1,244.51㎡	증799.8㎡
건축면적	548㎡	395.26㎡	795.16㎡	증399.9㎡
최고높이	7.8m	7.7m	10m	증2.3m
건축규모	1층	2층*	2층	-

※ 2층 부분은 49㎡로 별도 층이라기 보다는, 건물내부의 작은 전망대 형태임)

(4) 신청인 의견

- 2020.03.26.에 태강릉 주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제2020-0478호)를 득하여, 조성한 철도미니어처전시관(노원기차마을)이 개관(2022.11.18.) 약 10개월만에 방문자가 9만명을 넘는 등 성황리에 운영중이나,
- 우수한 전시콘텐츠에 비해 전시관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유사시설(오산 미니어처빌리지 - 경기 오산시)과 대비하여 과밀운영되고 있어,
- 시설 및 콘텐츠 규모 확대를 통해 민원사항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방문객 수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늘어난 방문자들이 노원기차마을 관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강릉, 화랑대철도공원 등 경춘선 숲길 인근 문화재, 편의시설의 방문으로 이어져, 태강릉 및 주변 활성화에 이바지코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23.07.06./문화재위원 ○○○)

- 기 허가된 사안이나 예산 문제로 일부만 건축했고 이번에 증축을 신청한 건임
- 그러나 기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서 2층으로 계획하여 건물 높이를 높이고 면적을 넓혀서 계획안이 들어왔으므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1구역 감안)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04

4.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양주 온릉」 주변 종묘배양장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온릉 주변에 종묘배양장을 신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8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온릉(사적)
 - 소재지 :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일영리)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4-35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대지면적 : 990m²
 - 건축(연면적) : 164.7m²(164.7m²)
 - 건축규모 : 1개동, 지상1층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최고높이 : 4.5m
 - 부지조성 : 잡석포장 525m²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23.11.16./문화재위원 ○○○, ○○○, ○○○)
 - 온릉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의 건축건으로 추후의 경관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필지의 통합과 분할이 이뤄진 지역으로 향후 추가건축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역 전체의 건물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설계도면 등 자료 보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보류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05

5.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양주 온릉」 주변 종묘배양장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온릉 주변에 종묘배양장을 신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8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온릉(사적)
 - 소재지 :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일영리)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4-3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대지면적 : 991m²
 - 건축(연면적) : 165.6m²(165.6m²)
 - 건축규모 : 1개동, 지상1층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최고높이 : 4.41m
 - 부지조성 : 잡석포장 763m²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23.11.16./문화재위원 ○○○, ○○○, ○○○)
 - 온릉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의 건축건으로 추후의 경관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필지의 통합과 분할이 이뤄진 지역으로 향후 추가건축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역 전체의 건물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06

6. 고양 서오릉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허가변경)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고양 서오릉」(사적)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양 서오릉 주변에 야영장 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년 사적분과 9차 소위원회('20.11.25.)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21년 공능분과 4차 위원회('21.08.17.)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22년 공능분과 2차 위원회('22.03.15.) 조건부가결
: 식재 및 보행자 동선은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22.5.16. 소현수 위원 검토 완료)
 - '23년 공능분과 10차 위원회('23.10.17.) 보류 : 설계도면 등 자료 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458(문화재구역에서 140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건물 1동 신축, 야영장 시설 신축(허가변경)

구분	1차('20.11.25./부결)	2차('21.08.17./부결)	3차('22.03.15./조건부가결)	4차('23.10.17./보류)	금회(안)	비고
대지면적	2,67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건축(연)면적	145.73㎡ (177.08㎡)	154.86㎡ (154.86㎡)	98.4㎡ (98.4㎡)	107.91㎡ (172.31㎡)	121.71㎡ (148.22㎡)	
건물높이	8.5m (평지붕)	5.0m (경사지붕)	5.5m (경사지붕)	8.0m (경사지붕)	6.9m (경사지붕)	
건축규모	지상2층, 1동, 철골조	지상1층, 1동, 철골조	지상1층, 1동, 철골조	지상2층, 1동, 철골조	지상2층, 1동, 철골조	
부지조성	최대 절토높이 약5m	최대 절토 약3.5m 콘크리트포장 (T=200mm) : 546㎡	최대 절토: 약3.2m 절토량: 160㎡ 콘크리트포장 (T=200mm):546㎡ 콘크리트옹벽 (H=0~3m): 68.3m	최대절토:좌동 절토량: 237.12㎡ 콘크리트포장 (T=200mm):268㎡ 콘크리트옹벽 0m	좌동	
야영장 부지	부지면적: 798.92㎡	부지면적: 좌동, 테크(5×3) 11개소, 수목 82주 벌채	부지면적1,340㎡ 수목 식재: 188본 ※ 수목식재 1,298주로 조건부 검토 변경	부지면적:좌동 수목식재: 1298주	좌동	-

(4) 신청인 의견

- 문화재 경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절·성토를 최소화하여 현 지반을 이용하여 조성할 계획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23.7.5./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야영장 시설 신축 부지는 1구역에 포함됨.
- 기존에 허가된 조건에서는 야영장 관리동은 1층이었으나 변경 신청한 계획안에서는 2층이며 현장 검토 결과 서오릉 주변 자연 경관(녹지)에 2층 높이(8m)는 저해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지조사 이후 수정안(2층 면적 감소, 건물 높이 감소) 제출(2023.11.15.)

(2) 현지조사 의견('21.7.5./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해당 부지는 가파른 임야지형으로, 앞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다량의 절토와 벌목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당 부지의 현황도면과 계획도면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 상세 계획도면의 보완이 필요함.(※8.9.자 보완서류 제출)
- 현재의 도면에서는 야영장 시설에 대한 이용자 동선의 고려가 없음.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보행로를 계획하고 있지 아니한데, 장차 이용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차후 보행로의 설치 가능성이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07

7. 남양주 영빈묘 주변 생활체육시설 부지조성 및 건축물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남양주 영빈묘」 주변 생활체육시설(실내배드민턴장) 부지 조성 및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7월,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부결(사유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23년 8월,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부결(사유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25-16(문화재구역에서 179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생활체육시설(실내배드민턴장) 부지조성 및 건축물 신축

구분	'23.7월 심의: 부결	'23.8월 심의: 부결	금회 신청사항	비고
부지면적	2,600㎡	2,300㎡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807.53㎡/807.53㎡ (가동: 779.40㎡, 나동: 28.13㎡)	좌동	717.53㎡/717.53㎡ (가동: 689.40㎡, 나동: 28.13㎡)	90㎡ 감소
건축규모, 건축구조	지상 1층, 2개동, 경량철골조	좌동	좌동	
최고높이	9.8m(원형지붕)	8.5m(경사지붕)	좌동	
옹벽	113m(H:1.0~3.0m) 조경식생블럭 1단설치 및 부분조경식재	247m(H:2.0~3.0m) 조경식생블럭 2단설치 및 전면조경식재	좌동	
성토량/절토량	1,476㎡/1,808㎡	1,448㎡/1,040㎡	좌동	
주차계획 및 배치, 코트 수	주차대수 : 16대, 5코트	주차대수 : 14대, 샤워실 이동, 5코트	주차대수 : 22대, 4코트	주차 8대 증가, 1코트 감소

(4) 신청인 의견

- 남양주 영빈묘 주변 불법 쓰레기 야적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여 문화재 원형을 보전하고,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배드민턴장) 신축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리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3.07.07./문화재위원 ○○○)

- 1구역에 위치한 체육시설로서 수요조사 근거가 필요함. 코트 5개 규모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이격거리가 충분하지만 신청지가 1구역에 위치한만큼 계획 규모의 타당성 (면적과 높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08

8. 남양주 사릉 주변 창고시설 신축 (8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남양주 사릉」 주변 창고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사릉 주변에 창고시설(8건)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1.12.21. 공능분과 위원회 보류(사유: 건축적 적정성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보완)
 - '22.3.15. 공능분과 위원회 부결(사유: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과도한 건물 높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7인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사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72-56일원(문화재구역에서 190~224m 이격)
 - 허용기준 2구역(평지붕 5m 이하, 경사지붕 7.5m 이하)
 - 사업내용 : 창고시설 신축

구분	'21.12월 심의: 보류	'22.3월 심의: 부결	금회 신청사항	비고
건축면적	420~2,015㎡	좌동	563~1,837㎡	3개동 최초보다 축소,
연면적	840~4,040㎡	좌동	915~3,674㎡	나머지동 기존과 동일
최고높이	평지붕 10m	좌동	경사지붕 10m	평지붕 → 경사지붕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2층 (24개동)	좌동	지하1층/지상2층 (8개동)	
건축물용도	창고	좌동	좌동	
건축구조	철골구조	좌동	좌동	

(4) 신청인 의견

- 신청지 인근은 밀집된 창고단지로 개발되어 있으며. 금회 신청 건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창고시설 신축) 행위허가 신청 건입니다. '22.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불허된 사항에 대해 문화재와 조화될 수 있는 입면계획으로 재접수합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21.12.15./문화재위원 ○○○)

- 사릉의 정면에 위치한 창고단지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안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에 속하면서 기존 건물의 최고 높이가 5.5m이던 것을 10m로 높이겠다는 것이므로 건물 높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하 1층이 들어가는 건물이 있으므로 절토 사항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사릉의 능상에 올라가 관찰한 결과 사릉 정면의 나무 높이가 20m 전후가 되어 사릉에서 신청지의 창고 건물이 조망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함

(2) 현지조사의견('22.03.03./문화재위원 ○○○, ○○○)

- 대상지는 사릉 문화재 구역의 남측 바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음
- 허용기준 2구역으로 경사지붕의 경우 7.5m까지 허용하고 있어 계획된 10m 높이의 건축물은 주 출입구 쪽에서 보이는 경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3) 현지조사의견('23.11.14./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사릉에서 190~224m 이격된 2구역의 현상변경 현지조사 건임.
- 신청한 건물의 최고높이는 10m로서 현행기준 7.5m를 초과하였음. 초과한 사항에 대한 기준 완화를 주장할 지형 및 지세 등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문화재 경관 침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릉과의 위치 및 주변지역 개발 상황으로 볼 때 2구역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09

9. 남양주 성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남양주 성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성묘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성묘(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12-8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2-3번지 (문화재구역에서 306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부지조성(석축, 옹벽, 교량) 및 신축공사

- 대지면적 : 563m²

- 건축면적/연면적 : 105.58m²/170.48m²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 7.5m

- 성토량 : 81m³

- 석축 : H=0.5m ~ 3.4m, L=72.5m

- 역L형옹벽 : H=0.5m ~ 1.5m, L=48.0m

- 교량 : H=5.5m, W= 6.0m, L=8.0m

(4) 신청인 의견

- 현재 공사 중인 '농어촌도로 212호선 도로확장공사'로 현황도로에서부터 공사도로가 2.5m 높아지고 구거 하천 선으로 도로옹벽이 생기면 기존에 사용하던 토지의 진입이 불가능해지고 생산관리지역 상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로확장공사가 완료 되기 전에 구거 점용 및 신설 교량 설치하여 토지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허가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거 하천 범람 시 옹벽 구조물이 없는 기존 농지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22.11.14./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남양주 성묘로부터 306m 이격되어 있는 1구역에 위치한 현상변경심의 건임.
- 문화재로부터의 조망은 능선으로 인해 저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하천에 면한 대지로서 반지하층 침수 위험이 있으며 경사면 절토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물을 동측으로 이동하고 반지하를 1층으로 높여(1~1.5m) 절토량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함.
- 외장재의 색상을 갈색 계열의 차분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 교량이 눈에 잘 띄므로 화려한 디자인을 피하고 문화재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안전하게 시공할 것을 권장함. 도로변 가각부를 추가하여 통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교량의 적정 폭, 색상, 재질 등을 조정·반영하여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10

10.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천연기념물(개비자나무) 통합 고시
- 조정사항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7-94호, 2017. 08. 16.)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시 별도 심의		
7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8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35호 용주사대웅보전, 문화재자료 제36호 용주사천보루)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시 개별검토		
7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8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보물 제1942호 용주사 대웅보전)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36호 용주사 천보루)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허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확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시목·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		

(4) 신청인 의견 :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

- 금회 화성시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 마련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용역 발주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1,2차)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
- 주요 조정사항은 문화재별 기 마련된 허용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추가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2022년 일부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부합되도록 단어 및 내용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화성시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11

11. (사적)파주 장릉 외 3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파주 장릉, 파주 삼릉, 파주 소령원/수길원」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장릉, 파주 삼릉, 파주 소령원/수길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파주 장릉(사적), 파주 삼릉(사적), 파주 소령원/수길원(사적)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조정사항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파주 장릉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7-94호, 2017. 8. 16.)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39호 정연묘역)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파주 장릉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39호 정연묘역)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		

○ 파주 삼릉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7-69호, 2017. 5. 8.)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파주 삼릉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		

○ 파주 소령원/수길원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7-11호, 2017. 1. 19.)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파주 소령원/수길원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 		

(4) 신청인 의견 :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

라. 참고사항

- 의견내용(과주시 주민공람 의견제출)
 - 규제 대상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일어나는 실정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 등 타 지역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넓은 규제 면적에 대한 완화 조치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됨.

마. 검토의견

- 금회 과주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 마련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용역 발주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1,2차)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
- 주요 조정사항은 문화재별 기 마련된 허용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추가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2022년 일부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부합되도록 단어 및 내용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과주시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12

12. 양주 온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양주 온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온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양주 온릉(사적)
-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조정사항
 -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양주 온릉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7-11호, 2017. 1. 19.)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양주 온릉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 		

(4) 신청인 의견 :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

- 금회 양주시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 마련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용역 발주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1,2차)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
- 주요 조정사항은 문화재별 기 마련된 허용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추가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2022년 일부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부합되도록 단어 및 내용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양주시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13

**13.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천연기념물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통합고시

- 조정사항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6-82호, 2016.09.12.)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신청인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

- 금회 여주시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 마련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용역 발주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1,2차)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
- 주요 조정사항은 문화재별 기 마련된 허용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추가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2022년 일부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부합되도록 단어 및 내용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여주시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14

14. 경복궁 장소사용허가(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가 ‘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개최를 위하여 광화문 권역의 장소사용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안전으로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가 ‘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개최를 위하여 장소사용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여 안전 부의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광화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 (3) 신청내용
 - 사용위치 : 광화문 전면 및 후면, 광화문 월대
 - 사용내용
 - 행사명 : 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 * 서울시 주최 ‘2023 WINTA Seoul My Soul’ 의 연계 행사
 - 장소사용일시 : ‘23. 11. 30.(목) 08:00 ~ ‘24. 1. 26.(금) 24:00 (58일간)

장소사용기간	11.30. ~ 12.10.	12.11. ~ 12.14.	12.15. ~ 1.21.	1.22. ~ 1.26.
사용내용	구조물 및 시스템 설치	시스템 리허설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 진행 (38일간)	조명, 구조물 철거

- 시설물 설치

위치	설치목적	설치내용
광화문 전면 공장 바닥	조명 레이저쇼 진행	조명 시스템 설치(일반 조명) -공장과 이격 0.8m, 좌우 길이 각 (좌)141.5m (우)164.6m -LED바 60개, LED스트로브 68개, 안전펜스 등 *기존 설치조명 간섭 없이 바닥에 적재식 설치 *월대 위 제외
광화문 내벽 앞		조명 시스템 설치(조명타워 및 무빙조명) -내벽과 이격 1m, 좌우 길이 각 36m, 높이 4m, 너비 2m -레이어(조명타워) 128개, 빔(무빙)라이트 100개 -물탱크(4t, 32개), 물차 출입 등
		레이어 차폐 패널그래픽(사진실사) 포토존 구성 -레이어 구조물 외부 목재 패널 설치(레이어와 규격 동일)
광화문 전면 좌우 공장 끝	조명 전기 공급	발전차 배치 -좌우 각 1대(300KW)

- 신청 행사 개요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시공의 문〉		
기간	시간	행사내용
‘23. 12. 15.~ ‘24. 1. 21. (38일간)	평일	18:00~21:00 미디어파사드 및 조명 레이저쇼 -운영횟수: 일 3~4회(매시 정각 시작) * 신청(1월 1일) 6회 운영
	주말, 공휴일	18:00~22:00 -러닝타임: 회당 35분 -영상구성: 시그니처 미디어파사드(5분) → 조명쇼(5분) → 작품 미디어파사드(25분)
	신청	18:00~24:10 -참여작품: 광화산수도(이이남) 외 해외작품 4개
〈미디어 퍼포먼스 ‘빛의 축제’〉		
일자	시간	행사내용
‘23. 12. 31.	미정	원타서울 행사 피날레 공연 -장소: 광화문 월대 -내용: 미디어아트 및 난타 융복합 공연(미정)

(4) 신청인 의견

- 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는 ‘Beat’s Square’, “빛과 음악(Beat)으로 변화하는 광화문광장, 가슴 뛰는 서울을 새롭게 창조하다”를 슬로건으로 전통과 현대, 예술과 기술, 도시와 자연의 6가지 서울의 모습을 담고자 함.
- 이번 행사를 통해 광화문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의 미디어아트 랜드마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시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 및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검토의견(경북공관리소)

- 관람객이 많은 주요 연말·연초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북공의 대표장소인 광화문 전후면에 장기간(58일간) 구조물 설치**를 유지할 경우 **관람 지장 및 관람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평일 대비 관람인원이 많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초를 포함하며, 코로나-19 완화 및 광화문 월대 복원으로 작년 대비 **올해 관람인원이 대폭 증가**
 - * ('22) 12월 평균(8,710명), 성탄절(10,193명), 12/31(11,662명), 신정('23.1.1.)(12,514명)
 - ('23) 10월 평균(36,312명), 추석(10.1.)(138,334명)
 - 광화문 전면 조명 설치 및 안전펜스 설치에 따른 보행자 통행에 지장
 - 광화문 내벽 일대 수문장 행사 및 경북공 입장권 매표가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에 대형 구조물(레이어)이 설치되어 경관저해 및 관람·안전관리 어려움
- 광화문 월대 위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 시 도로 통제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됨
- 따라서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치 규모와 장소, 기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유사 장소사용(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처리 현황

행사명(주최)	사용기간	행사기간	시설물 설치	비고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식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23.10.13.~10.15. (3일간)	'23.10.15. (1일)	월대 위 이동식 조명 설치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2.12.13.~'23.1.2. (21일간)	'22.12.16.~'23.1.1. (16일간)	설치물 없음	*월대 복원 공사로 미실시
세 개의 빛, 세계의 빛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13.8.11.~8.21. (11일간)	'13.8.15.~8.21. (8일간)	광화문 앞 보도 빔프로젝트 임시 설치(18개)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행사 기간 축소, 조며여 구조물 설치 지양, 관람객과 차량 통제 계획 구체화 등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소위원회 검토를 받아 추진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 보고사항 】

안전번호 공능 2023-11-15

1. 효종 영릉 향·어로 및 주변 복원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여주 영릉과 영릉』 내 효종릉 향·어로 및 주변 복원정비공사의 실시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효종 영릉 사적지정구역내의 변형·교란된 향·어로 정비, 이완, 기울어진 어구·수계 정비, 봉분 변형 정비 및 비각 주변 지형 복구, 기존건물 보수 및 주변 정비 등 공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 1970.05.2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901-2 일원
 - 사업내용

주요공종	사업 내용
향·어로 해체보수	향어로 경계석 및 박석 100% 해체보수(117.76㎡), 파손돌 및 부식된 돌 선별 교체
어구 보수 및 배수정비	어구 수계시설 정비(L=46.83m) : 어구 상단1단 석재드잡이, 터고르기 후 잔디식재(13.05㎡) 정자각 주변 터고르기 후 잔디보수(552.86㎡) 수라간 전면 박석 해체보수(25.03㎡), 수라간 전면 마사토다짐(53.85㎡) 가설로 및 가설작업장 터고르기 후 잔디식재(195.0㎡)
봉분정비	인선왕후 봉분 곡 정비(층단각기 34.61㎡, 층단다짐 16.69㎡, 잔디 79.25㎡ 등)
건물보수	수라간 변와보수(보토이상 해체보수 20.48㎡) 기단모서리석 4개소 교체, 기단생석회다짐 해체보수 등
	수복방 개관이상 해체보수 22.35㎡ 후 변와보수 및 부식재 교체, 부식 목부재 교체 및 벽미장 보수)
	비각 화강석장대석 상부1단 해체보수 내,외부 방전 해체보수(21.03㎡) : 내부 수제전돌 50% 교체, 외부 수제 전돌 100% 교체, 기단 주변 배수 정비(지형복구)

(4) 신청인 의견

- 효종 영릉 사적 지정구역내의 변형·교란된 향·어로, 수계, 봉분정비 및 주변 지형복구 등의 국가유산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임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의견('23.06.23./문화재위원 ○○○, ○○○, ○○○)

- 향·어로의 박석은 열화, 마모에 의한 입상분해현상, 균열, 이완, 변색 및 박석사이로 시멘트 몰탈로 채워져 있으므로 훼손 현황을 조사하여 보충 및 수리방안 작성
- 수복방은 처마의 기울음과 기와골의 흐트러짐으로 누수현상이 있으므로 산자이상 해체보수하고 공사과정에서 단면조사를 통해 보수범위를 정할것을 권고함
- 수라간은 지붕기와 고르기과 기단의 신채보충된 부분은 가공정도를 기존과 같이 보완하고 기단주변의 지반을 조정하여 우·배수처리 하도록 함
- 왕후릉의 봉분의 변형으로 난간하부각 토사이에 물려있어 난간석의 보존 관리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래 봉분기저부를 찾아 봉분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됨
- 비각 기단석열의 이완과 배부름 현상 및 바닥 방전도 이완되어 드잡이 및 정비와 함께 주변 우·배수처리를 계획하도록 함

(2) 관계전문가 의견('23.10.19./문화재위원 ○○○, ○○○)

- 향어로는 홍살문에서 금천교까지는 2로의 형식이나 금천교에서 정자각까지는 3로의 형식은 공사전에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정비하도록 함
- 어구 맨윗단 전체 드잡이 계획은 최소화 하도록 함
- 건물주변 퇴적토 등의 제거는 현황 중·횡단의 계획 종단도에의해 배수구배 조정 등 지반계획선을 결정하도록 함
- 왕후릉은 봉토기저부의 토압으로 난간석보존관리에 영향이 있으므로 “조선왕릉 봉분 및 능침지반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함
- 비각의 방전은 건물 내·외부와 서로 규격이 다른 부분은 기존 부재는 최대한 재사용하고 교체되는 신재는 구재와 같은 규격으로 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

【 보고사항 】

안전번호 공능 2023-11-16

2. 창경궁관리소 근로자 휴게실(가설 컨테이너) 설치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창경궁 내 근로자 휴게실(가설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창경궁관리소 근로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하여 가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 창경궁 경내
- 사업내용 : 가설 컨테이너 1동 설치
- 설치규모 : 3.4m X 9.5m X 3.2m(높이)

(4) 신청인 의견

- 매수표 및 청소원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임
- 근로자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가설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향후 기존 방호실 등 리모델링을 통해 휴게공간 마련 시 가설 컨테이너 철거 예정

<향후계획>

- 가설 컨테이너 설치('23.12월)
- 예산확보를 통한 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및 가설 컨테이너 철거('24 ~ '25)

라.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

【 보고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17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구리 동구릉」 주변 주상복합 신축(허가변경)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구리 동구릉	경기도 구리시	○○○	<주상복합 신축(허가변경)>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01, 701-1, 701-2 (6구역/문화재구역과 420m 이격) ○ 사업내용 : 주상복합 신축(허가변경) - 대지면적: 2,234.7㎡→2,500.3㎡(265.6㎡ 증) - 건축면적: 1,564㎡→1,563.79㎡(0.21㎡ 감) - 연 면 적: 21,782.01㎡→20,460.04㎡ (1,321.97㎡ 감) - 건축규모: 2개동, 지하5층~지상17층 → 2개동, 지하4층~지상17층 (지하 1층 감소, 지상변동없음) - 최고높이: 53.8m(변경없음) - 허가된 위치에서 건축물 위치 변경 (최대 4.69m 이동) - 기준층 주동 평면 변경	허가	'23.10.23.
(사적) 서울 영희원과 승인원	서울시 동대문구	○○○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변경 허가)>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 일대 (2,3구역/ 문화재구역과 5m 이격) ○ 사업내용 : 청량리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허가변경) - 건축면적(기허가)6,498.7541㎡ → (변경)6,498.8010㎡(증0.0469㎡) - 연면적(기허가)111,177.9030㎡ → (변경)111,214.9418㎡(증37.0388㎡) - 지하 동전기실 및 우수저수조 위치 변경, 세대창고 반영 등으로 면적 증가	허가	'23.11.13.
(사적) 양주 온릉	경기도 양주시	○○○	비공개(군사시설 관련) ※ 2022.5.23.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되어 재신청된 사항임	허가	'23.11.09.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파주 삼릉	경기도 파주시	○○○	<p><기존 공장 부지 증설>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24-88 (3구역/ 문화재로부터 293m 이격) ○ 사업내용 : 공장 부지 증설 - 대지면적 : 2,836㎡ - 건축(연)면적 : 199.7㎡(199.7㎡) - 건축규모 : 1개동, 지상1층 - 최고높이 : 8m - 최대절토깊이 : 5.5m - 절토/성토 : 711.7㎡ / 53,671㎡ - 보강토 용벽(H=0~3m): 168.5m</p>	허가	'23.11.09.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p><태양광 설비 설치>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67-94 (4구역/ 문화재로부터 280m 이격) ○ 사업내용 : 태양광 설비 설치 - 대지면적 : 961㎡ - 설치면적 : 128.6㎡(기존 건물 지붕에 설치) - 최고높이 : 13.6m(경사지붕)</p>	허가	'23.11.09.
(사적) 파주 삼릉	경기도 파주시	○○○	<p><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봉일천리 일원 (1~3구역/ 문화재로부터 180m 이격) ○ 사업내용 : 하수관로 정비 - 오수관로, 맨홀펌프 신설, 배수설비 정비 - 차집관로 신설 및 증설 등 ※ 2020.08.06.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되어 재신청된 사항임</p>	허가	'23.11.14.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